

'기본서' 마이채권법 정오표

ver. 2023. 10. 24

p	위치	사유	변경 전	변경 후
65	2. 나.	삭제	채무자(=가해자)가해자의 과실은 ...	채무자(=가해자)의 과실은 ...
77	2. (ㄷ)	수정	(ㄷ) 손해의 발생 손해발생을 입증하여야 한다.	(ㄷ) 손해의 발생 손해발생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.
140	3. 가	수정	주채무자의 부탁으로 ... 수탁보증인이라고 하고, 보증인의 부탁 없이 ...	주채무자의 부탁으로 ... 수탁보증인이라고 하고, 주채무자 의 부탁 없이 ...
282	다. (2)	수정	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던 악의의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할 ...	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 속하지 아니함을 몰랐던 선의의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 악의의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할 ...
286	(1),(2)	수정	...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	...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 에는 매도인에
328	3. 1.	수정	1. 공사도급계약에서 이행보조자 ...	1. 공사도 급 계약에서 이행보조자 ...

p234 2. 도급 부분 교체

4.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(=수급인의 지체상금지급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) - 동시이행관계×

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(대판 2015.08.27. 2013다81224, 81231).

좀 더 꼼꼼히 검수를 하지 못해서 벌어진 실수로 수험생들에게 불편을 드려 참으로 죄송합니다.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정오표와 같이 고쳐주세요.